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

이주계획서 및 신탁등기 서류 제출

2016.02.29(월) ~ 03.18(금)

- 평일,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4:00
- 일요일 휴무, 3월 1일 근무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일정 및 상담 안내

A. 이주 일정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 신청기간	**2016년 02월 29일(월) ~ 2016년 03월 18일(금)**
이주 기간	**2016년 03월 30일(수) ~ 2016년 07월 29일(금)**
이주비 지급개시	**2016년 03월 30일 (수) 부터**
접수 시간	**월 ~ 토 : 오전 10시 ~오후 4시** (중식시간 12 : 30 ~ 13 : 30) (일요일 휴무, 3월 1일 근무)
접수 장소	**조합 이주관리센터** (과천주공 1단지내 컨테이너)
기 타	이주계획서 제출 후 이주확정일 최소 15일 전에 “이주일자확정 신고서” 및 구비서류 (신규 부동산계약서 및 이삿짐계약서)등 제출

※ 상기 일정은 관리처분인가 일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B. 이주관련 업무상담 안내

업 체 명	주요 업무 내용	전 화 번 호
조 합	이주 및 신탁업무 총괄	☎ (02) 504–6800
(주)한성이엔씨 (이주관리센터)	이주관리 · 촉진업무 (이주계획서 접수/ 상담 · 안내/ 이주지원 등)	☎ (02) 507–7703 ☎ (02) 507–5501 ☎ (02) 507–4405
신한은행 과천지점	이주비 대출업무	☎ (02) 507–5050
국민은행 과천지점		☎ (02) 503–6013
우영법무사합동법인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업무	☎ (02) 599–8010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 (02) 502–2996

C. 이주관리센터(서류접수처) 안내도



D. 서류접수 순서안내

① 서류접수처 방문

▶ 제출장소 : 조합사무실 옆 컨테이너 사무실
▶ 제출서류 확인 : 이주계획서 / 이주비 신청 / 기타 조합관련서류 등

② 법무사 사무실 방문

▶ 제출장소 : 조합사무실 앞 컨테이너 사무실
▶ 제출서류 확인 : 신탁등기 서류 등

③ 이주비대출 금융기관 사무실 방문

▶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
▶ 제출서류 확인 : 이주비 대출 관련 서류

④ 서류접수 완료

※ 구비서류, 절차 등은 조합원님 댁으로 우송해드릴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책자 혹은 조합 홈페이지(www.gcapt1.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Ⅰ.이주 안내

1. 이주 개요
2. 동별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 신청기간
3. 이주지연 및 거부 조합원(세입자 포함)에 대한 조치
4. 이주지연 및 거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명도소송 대상(예정)자

Ⅱ.신탁등기 안내

Ⅲ.이주비 대출 안내

1. 평형별 이주비
2. 이주비 대출조건 등
3. 이주비 신청 및 지급 절차
4. 이사비 신청 및 지급 절차

Ⅳ.이주 및 신탁등기 구비서류

Ⅴ. 각종 제출서류 양식

Ⅰ. 이 주 안 내

1. 이주 개요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주를 돕기 위하여, 이주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주비는 신청기간 내에 조합원이 본 안내문에 기재된 일체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1순위)과 **신탁등기를 마친 후 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가스요금 등) **납부**와 폐기물처리 및 **열쇠반납이 이루어진 조합원**(세입자, 임시거주자 포함)의 **이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조합원께 지급됩니다.

이 주 책 임

이주는 조합원의 개별 책임으로서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조합원(세입자 포함)이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은 부득이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과 2016년 1월 1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이주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해당 조합원은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와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 지난 2016년 1월 1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내용과 관련 조합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사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관리처분인가 후 실시하는 조합원 이주시이주 지연 및 이주 거부 조합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됨과 더불어 그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시공사 공사비 상승 등 조합원의 부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합에서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이주계획서 미제출자 포함)에게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 등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명도소송, 점 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부동산의 인도 지연에 따른 조합의 사업비 지출비용(금융비용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비용 포함)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탁등기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조합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사항	2016년 1월 10일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총회에서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 및 이사회 위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

① 사업시행으로 조합이 정하는 이주기간이 통지되면 조합원은 이주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며, 이주시기, 이주기간, 이주비지급절차 등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 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동별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 신청기간

차 수	동 별	신청 기간	비 고
1 차	101동(40), 102동(40), 103동(40), 104동(40), 105동(30), 106동(40), 107동(40)	2016. 02. 29.(월) ~ 03. 04(금)	270세대
2 차	108동(30), 109동(40), 110동(50), 111동(49), 112동(30), 113동(30), 114동(30)	2016. 03. 05.(토) ~ 03. 09(수)	259세대
3 차	115동(30), 116동(30), 117동(30), 118동(30), 119동(40), 120동(40), 121동(40), 122동(40)	2016. 03. 10.(목) ~ 03. 14(월)	280세대
4 차	123동(30), 124동(12), 125동(12), 126동(12), 127동(12), 128동(11), 129동(18), 130동(12), 131동(12), 132동(12), 133동(11), 134동(12), 135동(12), 136동(18), 137동(12), 138동(6), 139동(18), 태양열주택(18), 주공점포(2)	2016. 03. 15.(화) ~ 03. 18(금)	252세대

※1.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조합원**이 직접 관련 **법무사사무소와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주비**(기본이주비 + 추가이주비)는 **2016년 03월 30일(수) 부터 지급**됩니다.

이주 단계별 세부 진행절차

조합원(또는 세입자)이 이주를 실시함에 있어 꼭 알아야할 사항을 기술한 것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내문 / 홍보물 숙지

이주일정, 이주비대출 금액 및 일정 등 (**세입자**에게 반드시 **사전통보 요망**)

※ 조합원 및 세입자

② 이주대상 주택선정

지역 · 환경 · 교육,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결정

※ 조합원 및 세입자

③ 이주계획서 제출
(이주비/신탁등기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주비 신청금액, 지급일자 등을 결정

※ 지정기간 내에 제출
(이주계획서/이주비신청서)

④ 임대차계약 등 체결

1순위결정 가능여부, 선순위설정 등 물건조사, 이주비 대출점검

※ 조합원 및 세입자

⑤ 이주확정 신고서 제출

확정된 이주일정 조합 및 이주관리사무실에 통보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이삿짐센터계약서 사본 제출)

※ 신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통보

⑥ 퇴거 준비
(공과금 등 정산)

관리비(전기.수도포함), 공과금(가스) 등 정산, 폐기물처리 전화이전신고(전화국) 자녀 전학신고 등

※ 조합원 및 세입자

⑦ 퇴 거

이삿짐운반, 각종 신고완료 (신주소, 연락처 등) 퇴거확인(조합)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집 열쇠 조합에 제출

※ 조합원 및 세입자
(단수,도시가스폐전 등)

⑧ 이주비 수령

관리비등 납부 확인 및 공가 확인 후 잔금지급 (조합→조합원→은행) 통장입금 확인(조합원)

※ 이주비 수령 등

⑨ 전입 신고

새로 이전하는 주택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인

※ 동사무소, 등기소 등

3. 이주지연 및 거부 조합원(세입자 포함)에 대한 조치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관리처분 인가 후 실시하는 조합원 이주 시 이주지연 및 이주거부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됨과 더불어 그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시공사 공사비 상승 등 조합원들의 부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합에서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께는**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지연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등기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에게는 **신탁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및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청구** 등을 하고자 합니다

■ 소송의 종류

구 분	내 용
건물의 명도소송	– 타인이 점유하고 내어주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겨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 – 재건축결의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제반의무, 특히 소유권에 관한 신탁등기 및 이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서 기인 – 이주계획서 미제출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과 ”명도소송“ 을 제기
처분금지 가처분	– 재건축 불참자나 미 이주 조합원의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위 – 재건축 불참자가 그의 구분소유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재산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권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이주비 금액과 대여조건, 조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 발생으로 건물철거 및 공사착공의 지연발생 – 전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미 이주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이주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도청구 소 송	– 조합 정관의 절차에 따라 미 이주자로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명 조치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후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로 청산금을 지급함.

조합정관 제 37조 (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

⑦ 조합원은 퇴거(자진 퇴거 또는 판결에 의한 퇴거 포함)후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며 조합이 임의로 철거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까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조합은 신탁등기 기간 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등기절차 이행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의 제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명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 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 또는 그 승계인이나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이주지연 및 거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주지연 및 거부 조합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물가 인상률에 따라 **공사비, 조합운영비, 이주비 이자, 기타 사업비 등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항 제6호 및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가 있고,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주지연 시 이주 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의 비용납부 의무**가 주어 지는 바, 일부 조합원의 이주지연으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주 지연을 초래한 해당 조합원이 그 손해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합정관 제 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조합정관 제 37조 (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명도소송 대상(예정)자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정해진 이주기간과 관계없이 조합에서 명도소송 및 신탁등기절차이행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신탁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자

1. 이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주기일이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보다 늦은 자

1. 이주기간에 이주를 거부하는 자 (세입자 포함)

1. 이주기간에 이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자 (세입자 포함)

1. 과다채무자로 이주비대출(기본 및 추가이주비)로 변제가 되지 않는 자

1. 거주자 중 이주지연을 초래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1. 이주관리업체가 조합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대상자로 지명하여 통보한 자

1.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 하기로 의결한 자

조합정관 제 37조 (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Ⅱ. 신탁등기 안내

※ 신탁등기는 이주계획서 접수기간 내에 조합에서 공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조합이 정한 장소에서 담당 법무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신탁등기는 조합정관과 신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재건축의 신탁**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원의 현물출자 행위**로서, 조합원 개별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등 재산권을 재건축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 · 처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

1)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재건축의 신탁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원의 현물출자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2항『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및 동법 제48조 제4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9조 제6항은『**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물출자 자산을 조합원 개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행사하게 되면 자칫 과다부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 사업비 증가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신탁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용 · 수익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겸 법인인 조합은 출자주주인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반드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 및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탁등기 의무를 해태(지체)하면 신탁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신탁등기의 효력

신탁등기를 완료하면 형식적인 소유자는 조합이 되므로 조합원이 임의로 사용 · 수익(담보 제공 등)하거나 개인사정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므로(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합원의 재산은 보호받게 되며 과다부채자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고유업무에 부합하게 됩니다.

5. 신탁등기한 재산은 조합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탁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부동산 등기부상의 형식적인 소유자는 조합이 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유지되며, 조합이 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탁계약서상의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분해야 하므로 신탁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원인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다만,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는 관리 및 처분권을 갖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신탁 받은 건물의 철거와 멸실 등기, 분할, 합병 등)

6. 신탁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소유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소유권은 조합에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원 의사에 따라 소유권 변경(매매 · 증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신탁등기 이후의 소유권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신탁에 대한 동의절차 후 조합의 위임을 받은 조합지정 법무사만이 관련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이후 소유권 변경(매매 · 증여 등)을 하실 경우에는 이주비 승계에 따른 은행의 사전 동의 및 조합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탁등기 업무 상담]

법무사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우영법무사 합 동 법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17, 2층 (서초동, 동신빌딩)	Tel/ 02) 599-8010 Fax/ 02) 599-8083

소유권 권리변경 신고

과천주공1단지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조합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의거 **14일 이내에 명의변경을 조합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가. 등기부등본 1부

나. 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선임동의서 및 소유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지장 날인 필수)**

☞ 소유권 변경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조합원(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은 **조합을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 상담**을 먼저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조합에 신고된 기존 주소지 등으로 조합이 행하는 각종 통지행위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 포함)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이주비 대출 안내

1. 평형별 이주비

소유 평형	이주비 최대 대출 한도 (원)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합 계
16평형	**261,000,000**	147,000,000	**408,000,000**
18평형	**298,000,000**	157,000,000	**455,000,000**
25평형	**400,000,000**	184,000,000	**584,000,000**
27평형	**438,000,000**	186,000,000	**624,000,000**
27평형(연립)	**438,000,000**	185,000,000	**623,000,000**
태양열연립	**438,000,000**	193,000,000	**631,000,000**
주공점포	**261,000,000**	198,000,000	**459,000,000**

※ 1. 총 이주비(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대출(가능)한도 금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입니다.

※ 2. 추가이주비 대출한도는 평형별 평균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최고한도 금액입니다.

※ 3.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다만, 기본이주비 미수령(기본이주비 미달 수령 포함) 조합원의 경우, 이주 개시일로부터 이주기간 만료일까지는 그에 따른 이자를 공동부담 하되, 이주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초 입주개시일까지의 이자만큼 부담금(또는 환급금)에서 감액(증액)하여, 잔금 납부시 정산합니다.

※ 4.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이 매월 은행에 개별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주비 대출금리 (2016. 2. 15일 기준금리 예시)

■ **기본이주비 대출금리** : **COFIX 기준금리** (6개월 신규취급액 기준) + **가산금리(1.39%)**
– 취급일 이후 6개월 동안에는 동일 금리 적용

(예시) 2016–02–15 현재 COFIX 기준금리가 1.65% 인 경우의 기본이주비 대출금리는?
☆ 기본이주비 대출금리 = 1.65%(COFIX 기준금리) + 1.39%(가산금리) = 3.04%

■ **추가이주비(개인대출) 대출금리** : **기본이주비 대출금리와 동일**

▣ **금융기관별 동별 업무담당 구분**

차 수	동 별
신한은행 (과천지점)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113동, 115동, 117동, 119동, 121동, 123동, 125동, 127동, 129동, 131동, 133동, 135동, 137동, 139동, 태양열주택, 주공점포
국민은행 (과천지점)	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0동, 112동, 114동, 116동, 118동, 120동, 122동, 124동, 126동, 128동, 130동, 132동, 134동, 136동, 138동

※ 신한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기 대출이 있는 조합원은 **기 대출 취급 은행에서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주비 대출조건 등

1) 대출 대상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에 제1순위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2) 대출 조건

-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에 기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권(이주비 대출한도 내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개인간 근저당권 등은 이주비 대출 실행 전에 말소**되어야 합니다.
- 기존에 선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이 대출한도 범위(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를 초과 되는 금액은 이주비 대출 실행 전에 상환하여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 조합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대환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평형별 이주비 대출 참조)

3) 대출기간 (상환방법)

이주비 대출기간(기본 및 추가이주비 동일)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이며, 공사완료 후 입주시 일시불로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조합원의 명의변경(소유권 변경)은 해당 은행의 대출승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되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주비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4)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이주개시일로부터 입주 만료일까지의 기본이주비 이자는 조합에서 사업비로 부담하고 입주 만료일까지 기본이주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 만료일 이후부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이주비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소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비용
: 1건 당 40,000원
-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시는 조합원 중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초본 상 마지막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

② 근저당권말소(제한물권) 등기비용
: 1건 당 50,000원
- 부동산등기부상 기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

③ 확인서면 비용 : 건 당 50,000원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④ 번역료 : 장 당 10,000원
-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조합원 중 영문으로 기재된 문서 제출 시 해당

⑤ 정부수입인지 대금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예시)

대출금액	인지세 (1/2 부담분)	채권할인료 (3%적용)	합 계
2억5천만원	75,000원	90,000원	165,000원
3억원	75,000원	108,000원	183,000원
3억5천만원	75,000원	126,000원	201,000원
4억원	75,000원	144,000원	219,000원
4억5천만원	75,000원	162,000원	237,000원
5억원	75,000원	180,000원	255,000원
5억5천만원	75,000원	198,000원	273,000원
6억원	75,000원	216,000원	291,000원
6억5천만원	75,000원	234,000원	309,000원

※ 1.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은 채권할인율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2. 상기 ①, ②, ③, ④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 신청 시 **현금을 지참**하여 해당 법무사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상기 ⑤항의 정부수입인지 대금 및 채권할인료는 이주비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서 공제됩니다.

※ 4. **추가이주비를 대출 신청하시는 조합원**은 기본이주비 대출로 인한 인지세 비용과 별개로 **추가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이주일자 및 이주비 대출일자 변경은 구두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시에는 입증 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서 및 이삿짐센터 계약서를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제출하신 후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이주비 신청 및 지급 절차

A. 이 주 비 신 청

유의 사항	– 이주비 신청은 이주비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이주 일자가 확정되면 이주일자 확정 신고서와 이주할 전 · 월세계약서 사본 (본인 또는 세입자)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집을 매수하여 이사하실 경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비는 1회에 신청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수회로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본이주비에 대한 계약금(기본이주비의 10%)을 지원받은 조합원은 이후 이주비에 대한 금액정정 및 취소가 "불가" 하오니 대출신청 시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조합에서 정한 이주비 신청기간
신청 장소	조합 이주관리센터
참고사항	– 추가이주비는 조합원 각자의 신용평가등급이 1등급 ~ 6등급 범위내 조합원에 한하여 은행에서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취급 금액을결정함

■ **이주비 신청 시 제출서류**

1) 이주계획서 및 대여금(이주비) 차입 신청서	2부
2) 이주비 잔금 지급 신청서	2부
3) 해지 • 공가 완납확인증	1부
4)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이주에 따른 이행각서	1부
5) 대출금 상환 이행각서	2부
6) 이주 및 신탁 • 철거 동의서	1부
7) 건축물 철거 • 멸실 및 대장 정리 동의서	1부
8) 개인정보이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9) 신탁계약서 및 대출약정서류 등	각 1부 (법무사 및 은행사무실에서 작성)

☞ 이주비 및 신탁등기 신청 시 제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이주관리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접수 시 작성합니다.

■ **이주비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이주비 계약금 (10%) 지원

기본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시 희망하시는 조합원에 한하여 해당평형 기본 이주비 한도금액의 10%를 지원합니다.(이주개시일 이후 부터 지급 가능)

가. 지원조건 :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비 대출관련 서류와 신탁등기 서류 등을제출한 조합원으로 기본이주비를 신청한 조합원.

나. 지원대상자

- 선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이 대출한도 범위(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주비에 대한 계약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해당은행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여신적격자로 판단된 조합원

※추가이주비는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세대별 기본이주비를 포함하여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조합 이주관리센터에 은행, 법무사사무소, 이주관리팀 직원이 상주하여 접수하며, 접수기간 이후의 이주비 신청은 해당은행 및 법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개별 신청하셔야 합니다.

B. 이 주 비 지 급

유의 사항	이주하시는 당일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완납 등 제반서류 일체와 폐기물처리 완료 및 현관 열쇠를 반납하시고 공가임을 확인한 후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이주 당일 공가(空家 : 빈집) 확인 후 지급

■ **이주비 지급기준 (조건)**

1)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에 기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권(이주비 대출한도 내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전세권, 개인간 근저당권 등은 이주비 대출 실행 전 조합원 책임 하에 말소 하여야만 이주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이주비 대출한도 내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주비 대출은행에서 대환처리(말소비용은 조합원 개별 부담) 가능**하오니, 해당 이주비 대출은행 직원과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주비를 지급받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주비 신청금액에 대한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여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4) 조합원 이주비 지급은 이주예정 일자에 인출 가능하도록 은행에서 일괄하여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해 드립니다. 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주한 후 공가 상태임을 조합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5) 이주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며, 이주비(대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날인해야 하므로 공동소유자 조합원께서는 공동소유자 전원이 함께 조합(이주관리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6) 이주비는 이주예정 일자에 실제로 조합원(세입자 포함)의 이주 여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7) 조합원이 미성년자이거나 영주권자(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외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 지정 법무사 및 은행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지급방법

1) 이주비는 이주계획서 및 신탁등기 서류를 제출한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계약금 (10%) 지급 : 기 언급한 조건을 갖춘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잔금 (90~100%) 지급

  이주당일 공가(빈집)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완납 확인 후 잔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자금이 필요한 날을 감안하여 잔금지급 최소 15일 전에 잔금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사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휴일 전일을 지급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 대출금 입금통장 관리 및 계약금, 잔금 지급방법

- 이주비 개설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 이주비 통장은 신한은행/국민은행에서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만일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은행과 직접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근 저당권 설정비용 및 기타 말소비용 등

- 은행대출에 의한 이주비 지급 시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이주비의 120%)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및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비용 등은 조합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출약정서에 첨부하는 정부수입인지 대금은 조합원과 해당은행이 1/2 씩 부담합니다.

■ 이주비 지급 시 제반 준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제 출 처
도시가스 요금정산 및 폐전	당일검침후 요금납부영수증	조합 /이주관리팀
관리비 완납증명서	관리사무소 발급/ 당일	조합 /이주관리팀
현관 열쇠	당일 반납	조합 /이주관리팀
이주 주소 / 전화번호	당일 제출	조합 /이주관리팀
인감도장	내방 시 지참	–
신분증	내방 시 지참	–

4. 이사비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방법 : 이사비 대여에 따른 약정서 제출

2) 지급금액 : 세대당 1,000만원

3) 지급방법 : 1개월 단위로 지급(이주기간 매월 25일 집계후 말일에 지급)

예시)

- ~ 4월 25일 이주완료 조합원 집계 : **4월 29일 지급**
- ~ 5월 25일 이주완료 조합원 집계 : **5월 30일 지급**
- ~ 6월 25일 이주완료 조합원 집계 : **6월 30일 지급**
- ~ 7월 29일 이주완료 조합원 집계 : **7월 29일 지급**

4) 지급계좌 : 각 조합원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주비 지급계좌

이주비 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절차도

이주비는 조합원께서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완료 후 이주를 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제공과금을 완납하신 영수증 사본과 함께 출입문 열쇠를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전달하시면 해당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 청 장 소
(조합 이주관리센터)

조합 / 이주관리팀
[작성서류]
- ◆ 이주계획서/이행각서
- ◆ 건축물철거 및 멸실 동의서

법무사
[작성서류]
- ◆ 신탁계약서
- ◆ 등기위임장

은 행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자필서명)
- ◆ 근저당설정계약서
- ◆ 통장신규개설 신청서

↓

관리사무소 / 관할기관
- ◆ 관리비 완납증명서 발급
- ◆ 관할기관에 가스폐전 완납

※ 접수 2~3일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일반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정산액을 문의 바랍니다.

↓

조합 / 이주관리팀
- ◆ 출입문 열쇠(비밀번호) 제출
-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완납 영수증 제출
- ◆ 공가 확인서(이주비 지급요청서) 발급

↓

은 행
- ◆ 이주비 대출금 지급

이주비 신청 절차

이주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조합/이주관리팀)	=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건축물 철거 및 동의서 등 작성
↓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신청 (법무사)	= 구비서류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체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계약금(10%)신청서 (은 행)	= 조합원 본인 자필서명 계약금(10%)신청서(희망하는 조합원만 해당)
↓	
소유권이외의 제한물권 말소 (조합원/ 법무사)	=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에 기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권 (이주비 대출한도내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전세권, 개인간 근저당권 등은 이주비 대출실행 전에 조합원 책임 하에 말소
↓	
이주일 확정 신고서 제출 (이사당일 15일 전까지) (조합/이주관리팀)	= 전 · 월세 · 매매계약서 사본 ⇨ 조합(이주관리센터)제출. [이사당일 15일 전까지 → 이주비(잔금)신청서 제출]
↓	
공가 확인서 발급 (조합/이주관리팀)	=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완납 및 폐기처분 대상물 등이 확인된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이주관리센터)에서 공가 확인서 발급 = 이미 이주 완료된 세대는 공가(空家) 확인 후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은 행)	= 공가 확인서 제출시 해당은행에서 조합원 계좌로 입금
↓	
이 주 (조합원/세입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주소변경 확인(신분증 등)

☆★☆ 이주관련 조합원 추가 유의사항 ☆★☆

1.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주계획서 제출 시 이주비를 지급받을 통장의 개설, 대출약정서, 신탁등기에 따른 신탁계약서 및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일괄하여 작성하며, 위 서류에는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합 이주관리센터를 방문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하셔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이주관리

① 세입자의 이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합원 각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신 조합원께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지 마시고, 이주기간 내에 이주 완료를 위하여 세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주일정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신 조합원은 정확한 계약만료일과 명도에 따른 임차인의 대응 등을 조합에 알려주시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 · 월세계약서 등) 사본을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전 · 월세입자)와 관련한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⑤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 · 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9.2.6〉

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탁등기 시 주의사항

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 본인이 직접 조합(이주관리센터)을 방문하여 법무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조합원이 실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변경사항이 전부 포함"** 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현행법상 반드시 두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 (주소변경)와 관련한 비용은 조합원이 실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성명 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용 없음"**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시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재란이 "공란"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주하시고자 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주하시는 경우에는 평일(월~금) 중에 이주비 수령을 위한 이주에 따른 이행각서 및 전 · 월세계약서 사본을 조합 (이주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이주 전 평일에 이주비(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영주권자(재외국민) 및 시민권자(외국인) 유의사항

①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공증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시민권자(외국인) 조합원으로 채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채무관련자가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필요사항은 이주관리센터
[☎:02) 507-7703 / 02) 507-5501 / 02) 507-4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 후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경우에도 조합으로 신고하셔야만 이주 이후 사업시행(변경), 분양신청 변경, 분양계약 등 재건축과 관련한 중요한 조합의 공지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불명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 전기 / 가스폐전 및 관리비 납부 안내

A. 조합원 및 세입자

- 이사를 가실 때 폐가전, 폐가구는 지정업체 가람자원에 신고하신 후 처리하시고, 생활쓰레기 등은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조합원 개인이 직접 해지 하시고 요금 완납증명서 등 해지관련 서류를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제출하셔야 이주비 잔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B. 해지 안내

해지신청 항목	해 지 방 법
도시가스 폐전 신청 **(코원에너지)** ☎ 02-502-2047	-이주 1주일 전에 도시가스 공급중지 폐전 신청 (전화로 신청) -이주 1~2일 전에 마지막 영수증 지참, 계량기 사용량(현 지침) 을 확인하여 코원에너지 담당자로부터 고지서 발급 받아납부하고 영수증은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제출.
관리비 완납 **(관리사무소)** ☎ 02-502-2996	- 이주시 관리비 완납증명서(당월분 포함)를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제출 (▣수도, 전기폐전은 관리소에서 관리하므로 별도 신고필요없음)
생활폐기물 처리 **(가람자원)** ☎ 010-3954-5822 ☎ 010-4444-5083	- 이주 1~2일전에 가람자원에 전화로 신청하시고, 폐기물(폐가전, 폐가구, 생활폐기물 등) 신고물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조합(이주관리센터)에 제출
※ **태양열주택의 경우**	- 수도, 전기, 가스 등은 관할센터에 개별신고 후 영수증 제출 • 수도(과천수도사업소) : 02-2150-3711 • 도시가스(코원에너지) : 02-502-2047 • 전기(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번

※ 이주 후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조합사무실(전화/ 02-504-6800)로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신탁등기 구비서류

Ⅳ. 이주 및 신탁등기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요망!
※ 이주비대출 관련서류는 대리인 접수 불가 : 조합에 개별문의 요망!
※ 조합원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해외체류자 및 상속자, 미성년자의 경우와 이주비 대출신청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제한물권의 상환 및 말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신한은행,국민은행)과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원이 내국인인 경우

①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할 시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사용 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내용 전부 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비용은 조합원 부담 (50,000원)	확인서면 : 법무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소득증빙자료	이주비대출 신청용	1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확인 및 각종 서류날인용	4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만 인정됨
공동 소유권자			2인 이상 공동 소유 일 경우 소유자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②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 예정이나 해외체류 중이어서 대리인이 신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단순체류자)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단순체류자는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소득증빙자료	이주비대출 신청용	1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 (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확인 및 각종 서류날인용	4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만 인정됨
위임장 (양식 "별첨")	이주비대출 신탁등기 업무위임용	3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요망	거주국 대한민국 영사(대사)관에서 발급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의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	

③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을 시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7	•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등본	신탁등기 이주계획서용	2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내용 전부 포함)	신탁등기 이주계획서용	2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신탁등기용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비용은 조합원 부담 (50,000원)	확인서면 : 법무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1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확인 및 각종 서류날인용	3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만 인정됨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이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기 타	•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등기만 진행되며 신탁등기 완료 이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신탁등기말소 및 재신탁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이 영주권자(재외국민)인 경우

① 영주권자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 시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여권번호로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병행 기재요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영사관 또는 외교부 국내거소사실증명 :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비용은 조합원 부담 (50,000원)	확인서면 : 법무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소득증빙자료	이주비대출 신청용	1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 (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확인 및 각종 서류날인용	4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주민등록증,국내거소증, 유효한 여권만 인정됨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이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② 영주권자 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여권번호로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병행 기재요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영사관 또는 외교부 국내거소사실증명 :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 신청용	3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음을 반드기 기재요망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소득증빙자료	이주비대출 신청용	1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 (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본인확인 및 각종 서류날인용	4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주민등록증,국내거소증, 유효한 여권만 인정됨
위임장 (양식 "별첨")	이주비대출 신탁등기 업무위임용	3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요망	거주국 대한민국 영사(대사)관에서 발급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의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	

3. 시민권자(외국인)인 경우

① 시민권자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서명확인서, 해외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서식은 법무사 사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서명확인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해외거주확인서 (주소변경내용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신청용	3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동일인증명서	신탁등기용	3	• 등기부등본상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경 전, 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공증 되어야 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국적변경등기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신청용	3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본증명서	국적변경등기용	1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비용은 조합원 부담 (50,000원)	확인서면 : 법무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4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여권 사본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이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② 시민권자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 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증명서 서식은 법무사 사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이주비대출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제한물권 말소 위임용 등	10	•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국내거소사실증명 (주소변경내용 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신청용	3		출입국관리소 또는 동사무소 팩스신청 (동사무소 문의요망)
동일인증명서	신탁등기용	3	• 등기부등본상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경 전, 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공증 되어야 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적변경등기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대출신청용	3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기본증명서	국적변경등기용	1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비용은 조합원 부담 (50,000원)	확인서면 : 법무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2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금융거래확인서	이주비대출 신청용 (채무확인용)	1	• 타행대출이 있는 조합원만 해당 ※이주일 기준 채무완제에 따른 총금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표시	기 대출 은행
신분증 및 인감도장		4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국내거소증, 여권 사본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이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③ 시민권자 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서명확인서, 해외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위임장 서식은 법무사 사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시 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법무사 제출서류만 안내.)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서명확인서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7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해외거주확인서 (주소변경내용포함)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제출용	2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동일인증명서	신탁등기용	2	• 등기부등본상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경 전, 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공증 되어야 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적변경등기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제출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신탁등기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본증명서	국적변경등기용	1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신탁등기용	**원본**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음을 반드시 기재요망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신탁등기용	1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신분증 및 인감도장		3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여권 사본
위임장 (양식 "별첨")	이주 및 신탁등기 업무위임용	3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요망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위임에 따른 대리인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2부 /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2부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의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	

④ 시민권자 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 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서류접수 방문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법무사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증명서, 위임장 서식은 법무사 사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시 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법무사 제출서류만 안내

구비서류	용 도	부수	비 고	발급처
인감증명서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동의용	7	• 사용 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국내거소사실증명 (주소변경내용 포함)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제출용	2		출입국관리소 또는 동사무소 팩스신청 (동사무소 문의요망)
동일인증명서	신탁등기용	2	• 등기부등본상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경 전, 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공증 되어야 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적변경등기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번역료는 법무사에 별도납부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변경내용 전부포함)	신탁등기 이주계획서 제출용	2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 등기부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비 조합원 부담 (40,000원)	동사무소 또는 구청
기본증명서	국적변경등기용	1	• 아파트 취득후 국적이 변경된 조합원에 한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권리증	신탁등기	**원본**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음을 반드시 기재요망	
지방세 납세증명서 (양식 "별첨")	부동산 신탁등기용	1	• 소유 부동산표시(동 • 호수)가 기재된 신탁등기용으로 발급 요망 • 발급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발급인에게 요청해야함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1	• 서류접수시 발급가능 수수료(1,000원)은 조합원 부담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신분증 및 인감도장		3	• 공동소유자 각각 준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국내거소증, 여권 사본
위임장 (양식 "별첨")	이주 및 신탁등기 업무위임용	3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요망	반드시 거주국 현지 공증인 인증
위임에 따른 대리인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2부 /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2부			
공동 소유권자			• 2인 이상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의 각,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	

각종
제출서류 양식

Ⅴ. 각종 제출서류 양식

구 분	제출 서류명	제출 시기	인감날인	비 고
양식 1	이주계획서 및 대여금(이주비) 차입 신청서 (2부 작성)	이주비 신청 시	○	전 조합원
양식 2	이주일자 확정 신고 및 이주비 잔금 신청서 (2부 작성)	이주일자 확정 시	○	전 조합원
양식 3	해지 · 공가 완납확인증	이주일자 확정 시	–	전 조합원
양식 4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이주에 따른 이행각서	이주일자 확정 시	○	전 조합원
양식 5	대출금 상환 이행각서 (2부 작성)	이주비 신청 시	○	전 조합원
양식 6	이사비 대여에 따른 상환약정서	이주비 신청시	○	전 조합원
양식 7	이주 및 신탁 · 철거동의서	이주비 신청 시	○	전 조합원
양식 8	건축물 철거 · 멸실 및 대장 정리동의서	이주비 신청 시	○	전 조합원
양식 9	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에 대한 동의서	이주비 신청 시	○	전 조합원
양식10	위임장	신탁등기 및 이주비 신청시	인감 및 서명 날인 공증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양식11	서명확인서	신탁등기 및 이주비 신청시	서명 날인 공증	시민권자 (외국인)
양식12	거주확인서	신탁등기 및 이주비 신청시	서명 날인 공증	시민권자 (외국인)
양식13	동일인증명서	신탁등기 및 이주비 신청시	서명 날인 공증	시민권자 (외국인)
양식14	처분위임장	신탁등기 신청시	서명 날인 공증	시민권자 (외국인)
양식15	지방세납세증명서	신탁등기 신청시		전 조합원

※ 양식 1, 2, 3, 4, 5, 6, 7, 8, 9는 조합에 비치하여 방문시 작성
※ 양식 10, 11 ,12, 13, 14는 법무사에 양식 요청하여 작성
※ 양식 15는 동사무소 및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양식 1]

이주계획서 및 대여금(이주비) 차입신청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 화 번 호	
※ 이주 주소			

1. 이주계획서

이주 예정일자	년 월 일		미 정 ☐
제한물권 (저당권 등)		임대차	■있 음 : 보증금 : 만원 / 월세 : 만원 만기일 : 20 년 월 일 ■없 음(☐ 본인거주 / ☐ 친척 / ☐ 기타)

[이주계획서 작성 시 참조사항]

① 조합원 이주기간은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에 따라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함.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이주기간을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조합원의(임차인 포함) 이주는 상기 이주기간 중에 반드시 이주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한물권 사항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전세권 등)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채무액, 채무내용, 채권자 등)

2. 대여금(이주비) 차입 신청서 (※입금계좌번호 : 은행 (접수일 신규개설))

(1) 기본 이주비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금액)	추가 이주비(개인대출) (2) 은행(담보범위 70%이내)	합 계 [(1)+(2)]	비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① 대출이주비금리부담 :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리부담은 조합이 지정한 이주기간 내에서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나 입주지정기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추가이주비의 이자는 조합원 각자가 부담하며 이자납입기일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이주비 계약금 신청여부

이주비 계약금 신청 여부	
금 액(기본이주비의 10%)	미 신 청
백만원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대표 조합원 성명 :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2]

이주일자 확정 신고 및 이주비 잔금신청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 화 번 호	
※ 이주 주소			

▣ 이주일자 확정 내역

이 주 확 정 일 자	2016년 월 일 (요일)

※ 확정된 이주일 15일 전까지 본 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이주비잔금이 이주일에 지급됩니다.

▣ 이주비 계약금 수령 여부

금 액(기본이주비의 10%)	미 수 령
백만원	

▣ 이주비 잔금 신청내역 (이주비 계약금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 기본 이주비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금액)	추가 이주비(개인대출) (2) 은행 (담보범위 70%이내)	합 계 [(1)+(2)]	비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① 대출이주비금리부담 :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리부담은 조합이 지정한 이주기간 내에서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나 입주지정기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조합원 각자가 부담하며, 이자납입기일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주 일정이 확정되었기에 이주비 잔금을 신청하며, 이주 확정일에 차질 없이 이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첨 부 : 1. 이주할 곳의 전월세(매매)계약서 사본 1부(해당 조합원)
2.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이주에 따른 이행각서 1부(해당 조합원)
3. 이주비 수령 통장 사본

2016년 월 일

대표 조합원 성명 :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3]

해지 • 공가 및 완납확인증

▣ 조합원 인적사항

조 합 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택)	H.P)	
대리인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물건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상기 조합원 본인(대리인)은 위 소재 물건지에서 2016년 월 일자로 이주하며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 일체의 물건이 없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해지 절차를 완료하였고, 미납된 요금 등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요확인 및 처리할 사항(철거협력업체) :

1. 쓰레기처리확인
2. 수도계량기 폐전확인
3. 도시가스 폐전 및 가스폐전 영수증 확인
4. 전기폐전 및 급탕 단수 처리 확인(당월 요금 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첨 부 : 1. 수도요금 전월 영수증 사본
2. 도시가스 폐전영수증 사본
3. 현관열쇠

2016년 월 일

확 인 자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4]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이주에 따른 이행각서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주하시는 조합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자택 :	H.P :	

▣ 이주일자 확정 내역

이 주 확 정 일 자	2016년 월 일 (요일)

상기 본인(세입자 포함)은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주를 함에 있어 이주일자 마지막 평일에 이주비(잔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주비(잔금) 수령 후 이주확정일자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귀 조합에서 강제 이주조치 및 이주비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제반 민 · 형사상 여하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위 신청인 조합원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5]

대출금 상환 이행각서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각서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을 대출받음에 있어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한다.

1.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이주비(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바, 이주비는 이주완료 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제공과금을 정산한 후 "조합"의 동의하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사정(휴일 이주 등) 또는 "은행" 휴일 등으로 이주비를 직접 받지 못할 경우 "본인"이 "은행"에 신청할 경우에 "조합"이 대행하여 수령할 수 있음.

2.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 납입일에 "조합"이 "은행"에게 일괄 납부하기로 하며, 추가이주비는 대출이율에 따라 매월 이자 납입일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만일, "본인"이 추가이주비 대출이자를 2회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못하여 조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조합"이 "본인"의 기본이주비의 이자 납부를 중단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3. "본인"은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전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을 "은행"에 확보설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본인"의 사정으로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은 즉시(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이 산정한 금액(채권원금, 이자,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 등)을 "은행" 또는 "조합"에 배상한다.

4. 제3항을 위반하여 "은행" 또는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산정한 금액을 최고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은 "본인"이 신청한 분양신청을 취소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며, 조합 청산 시에 "본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는 등 모든 조치에 대하여 "본인"은 이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5. "본인"의 이주비대출 원리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대출기간 중 이른 날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주비 대출은 "본인"이 "조합"에 제출한 이주계획서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음. 다만, "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상각채권의 채무관련 여부 또는 담보제공 부동산에 압류 등이 있는 자는 이주비대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추가이주비대출은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이 대출한도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6.“본인”의 대출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본인”에게 대출금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상환을 지체할 경우 “은행” 또는 “조합”에서 소유부동산 또는 입주권에 대한 법적소송 등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7.“본인”은 “조합”이나 시공사의 동의 없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임대, 양도, 전매 등 아파트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함.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조합”과 “시공사” 또는 “은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을 최고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조합 청산 시 현금 청산하는 등 모든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8.“본인”은 본 각서 및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제반 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분양해제하는 경우 “조합” 이나 “시공사”는 계약 해제시까지 납입한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서 규정에 의한 위약금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을 최우선 변제할 것이며, 당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조합청산 시 본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함.

9.“본인”은 이주비대출 및 신탁등기, 건축물 철거.멸실 및 대장 동의서 등 조합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유자를 대표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공동소유자가 모두 동의한 것임을 확인함.

상기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였고, 본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함

2016년. .

소유 동호수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위 각서인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국민은행 / 신한은행 귀중

[양식 6]

이사비 대여에 따른 상환약정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H/P:		

▣ 이주일자 확정 내역

이 주 확 정 일 자	2016년 월 일 (요일)

이주기간 중 이주를 완료한 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1천만원의 이사비를 조합사업비에서 대여하고, 이사비를 대여받는 상기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약정에 동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 아 래 –

제1조(이사비 대여)
조합은 이주기간 중 이주를 완료한 조합원에 한해 조합이 지정한 날에 이사비 일천만원을 무이자 대여한다.

제2조(이사비 상환)
① 이사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은 입주시 분담금(환급금)에서 정산하여 상환한다.
② 당해 조합원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이사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이행전에 이사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당해 조합원의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다.

제3조(연체료 징구)
당해 조합원은 제2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사비 상환을 지연할 경우 조합의 사업비 대출약정서에 정한 사업비 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조합에 납부한다.

제4조(채권확보)
당해 조합원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사비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채권확보를 위해 당해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시설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동의사항)
당해 조합원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 약정서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첨 부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위 조합원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7]

이주 및 신탁 · 철거동의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1. 이주 및 신탁 동의서

상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주기간 내에 상기 본인의 소유주택 점유/거주 중인 본인 및 임차인을 본인 책임 하에 퇴거시킬 것이며, 위 기간 내에 퇴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을 대리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권한행사를 재건축조합에서 임의 집행함에 동의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거주지 전 · 월세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이주 확정일 **15일전**에 조합에 제출하고 잔금 수령 후 상기 계약서 이주일자(잔금일)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귀 조합에서 강제 이주조치를 취하여도 제반 민 ·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조합 정관 **제37조(이주대책)** 등에 의거 이주 및 신탁등기를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 아 래 –

① 해당 임차인 및 본인의 유/무상 자진 퇴거를 위한 협의 권한
② 동 건축물의 철거 및 공부상의 멸실 조치
③ 건축물의 명도소송 제소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한 대행 권한
④ 이주비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고 기간 내에 이주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법적 조치
⑤ 상기 ①,②,③,④항의 권한 행사시 발생되는 비용(해당 임차인이 요구하는 합의 이주 보상비 혹은 건축물 명도소송 제소 및 변호사 선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의 임의 집행과 그 집행비용에 대한 사전 공제 권한

2. 신탁 및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 손배소 결의 동의서

상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재건축결의 동의하였던 조합원이 조합에서 정하는 이주기간**(2016년 3월 30일 ~ 2016년 7월 29일)**내에 신탁 및 이주를 거부하여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할 경우 조합정관 **제37조(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추가 발생한 금융비용, 제반소송비용, 이주 지연으로 발생한 조합원 손실배상금 등 모든 제반비용을 이주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결의 동의하며,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그에 따른 법률절차의 진행 및 부대되는 모든 권한을 당 조합의 조합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동의합니다.

3. 건축물 철거 / 멸실 동의 및 위임장

상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의 철거 · 멸실의 신고)와 조합정관 **제38조(지장물의 철거 등)**와 관련하여 본인 소유 상기 소재 건축물을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추진에 의하여 이주비용을 수령하고 퇴거한 이후에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와 건축물 멸실 신청 및 멸실 등기를 하도록 동의 및 위임합니다.
※ 조합원 및 세입자가 이주 후 잔여물건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시 손상 · 파괴 및 폐기를 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함.

상기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 [이주 및 신탁 동의서 / 신탁 및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 손배소 결의 동의서 / 건축물 철거 · 멸실 동의 및 위임장]에 동의 및 위임하며, 원활한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위 신청인 조합원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8]

건축물 철거 · 멸실 및 대장정리 동의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현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부동산 표시)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 동의내용

– 상기 본인은 상기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정관에 동의하였으며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이주함에 따라 귀 조합에 인계하는 공가인 상기 건축물에 대해 가재도구 및 기타용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부정리 및 멸실 등의 처리를 본인을 대리해 귀 조합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위 신청인 조합원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9]

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에 대한 동의서

▣ 조합원 인적사항 (2인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현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부동산 표시)

동 · 호수 (부동산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면 적	평형 (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 동의내용

–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향후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탁등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미이주자에 대한 손배소 위임, 기타 이주에 따른 조합수행 업무에 상기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등 조합과 관련된 업무목적”의 고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조합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따라서 본 조합원은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및 소유권 현황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오며 아래와 같이 서명 · 날인 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위 신청인 조합원 (인감날인)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양식 10] ※ 영주권자 또는 해외체류자용

위 임 장(Power of Attorney)

▣ 위 임 자(MANDATOR)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여권번호			
현주소 (거주지 주소)			

▣ 피 위 임 자(THE MANDATED/ TRUSTEE)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 과천주공1단지 동 (태양열주택/주공점포) 호		

위임사항 : 상기 부동산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주와 관련된 서류(이주계획서 등) 작성 ·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행위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행위 일체
1.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행위, 담보제공행위, 기타 대출과 관련된 업무 및 요구불 통장 개설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상기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설정계약서 등) 작성 ·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행위 [채권최고액 기재 및 이주비 신청 •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신탁계약서 등) 작성 ·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 행위
1. 주소변경 및 제한물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 행위
1. 이주계획서 작성,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행위 등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함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음으로 본 위임장 공증으로 대신함 (단순, 해외체류자는 해당없음)

날짜(Date) :

위임자 서명(SIGNATURE OF MANDATOR) :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외공관(영사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양식 11] ※ 시민권자(외국인)용

서 명 확 인 서

1. 성 명(Name) :
   한 글(국적상실 전 한국명) : 한 자 :

2. 성 별(Sex) :

3. 생년월일(Date of Birth) :

4. 전화번호(Telephone No.) :

5. 직 업(Occupation) :

6. 본 적(Permanent Address) :

7. 현주소(Present Address) :

8. 시민권번호 및 취득일(Certificate of Citizenship No. And Issued Date) :

날 짜 (Date)

서명 (영문 서명)

[예 시 안]

법무사와 상담 후 작성 요망

법무사 : (02) 599-8010

확인	상기 서명이 위 본인의 것임을 사실 확인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양식 12] ※ 시민권자(외국인)용

거주 확인서

1. 성 명(Name) :
   한 글(국적상실 전 한국명) :　　한 자 :

2. 성 별(Sex) :

3. 생년월일(Date of Birth) :

4. 전화번호(Telephone No.) :

5. 직 업(Occupation) :

6. 본 적(Permanent Address) :

7. 현주소(Present Address) :

8. 시민권번호 및 취득일(Certificate of Citizenship No. And Issued Date) :

날 짜(Date) :

[예 시 안]
법무사와
상담 후 작성 요망
법무사 : (02) 599－8010

확인	상기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사실 확인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양식 13] ※ 시민권자(외국인) 해당

동일인증명서

1. 성　명 (New Name) :

2. 구이름 (Old Name) :

3. 성 별(Sex) :

4. 생년월일(Date of Birth) :

5. 개명사유 (Reasons for Name Change) :

6.전화번호(Telephone No.) :

7. 직 업(Occupation) :

8. 본 적(Permanent Address) :

9. 현주소(Present Address) :

10. 시민권번호 및 취득일(Certificate of Citizenship No. And Issued Date) :

날 짜(Date) :

[예 시 안]
법무사와
상담 후 작성 요망
법무사 : (02) 599－8010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201 년 월 일

[양식 14] ※ 시민권자(외국인) 해당

처 분 위 임 장

위임받는 자의 표시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위임자와의관계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다음사항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과천주공1단지　　동　　호

- **위임내용 :**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주와 관련된 서류(이주계획서 등) 작성 • 제출행위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행위 일체
1. 소유권이전(처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신탁계약서 등) 작성 • 제출행위 등 이에 관련된일체의 행위
1. 주소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에 필요한 업무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및 그에 따른 발급받는 행위
1.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행위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음으로 본 위임장 공증으로 대신함
1. 위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예 시 안]

법무사와 상담 후 작성 요망

201　년　월　일

법무사 : (02) 599－8010

위 임 인 :　　(서명)

주　　소 :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201　년　월　일

[양식 15]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1.22〉

지방세 납세증명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 즉시 Processing period :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성명(대표자) Name(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사업의 종류 Area of business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Current Business Location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해외이주 [ ] Emigration	해외이주 허가번호 Emigration Permission No.	해외이주 허가일 Date of the Permission　년 yyyy　월 mm　일 dd
	부동산 신탁등기 [V]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과천주공1단지　000동 000호** * 조합원 소유 동•호수 반드시 기재해서 발급요망 * 공유자는 각각 발급요망	
	그 밖의 목적 [ ]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액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63 of Basic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 Period of Validity　　년(yyyy)　월(mm)　일(dd)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시장 • 군수 • 구청장 Mayer • County chief • District chief　　직인

Memo